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9. 1.(목) 10:0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 (1인)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동석 행정법무담당관,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행정법무담당관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동석 행정법무담당관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5차, 제4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6-49-18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70조 제3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 및 인정 분야는 공익채널의 경우 방송법 제70조 제8항에 따라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고시된 방송분야는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선정 및 인정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사업자의 제출서류 등을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방통위에 제시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여부, 조건 부과 등을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공익채널의 경우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는 공익채널 심사위원 7인과 장애인분야 1인 등 8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방법 및 기준입니다. 심사방법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세부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16년도 공익채널 선정과 관련된 심사항목을 준용하되 그 심사항목을 심사사항의 특성에 맞춰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채널의 과거 운영실적’, 그리고 ‘관련 법령 준수’ 심사항목을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심사사항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 및 장애인복지채널 심사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및 인정 기준입니다.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신청 채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공익채널로 선정되지 않은 채널 중 심사위원회가 공익채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 사항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9월 5일 신청요령을 공지하고,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인정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에 보면 공익성 방송분야가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개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이 대상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대상 PP가 몇 개나 됩니까? 통계숫자가 나와 있지 않은데 대개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수십 개 채널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굉장히 많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PP들이 공익채널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우선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3개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3개 채널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고, 분야별로 최소한 1개 채널을 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혜택밖에 없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추가적인 다른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PP들이 공익채널로 선정이 되는 것을 원하는 이유가 소위 의무전송채널로 선정되어서 좋은 채널번호를 받아서 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겨냥해서 목표로 삼을 텐데 의무전송채널 선정권은 전적으로 SO, MSO 플랫폼사업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3개 채널 중에 어떤 채널을 송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SO가 하게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전적으로 사업자 판단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3등 이내에 3개 이상 선정이 되는데 3개라고 보고, 네 번째도 공익채널로 선정할 수 있게끔 이번에 길을 터준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3개쯤 된다고 보고 이 3개를 플랫폼사업자가 반드시 3개 다 의무전송채널로 선정하는 경우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개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몇 개 정도 의무전송채널로 해 줘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통상 보면 아날로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3개 사업자가 인정되면 그중에 1, 2개 정도 송출하고 있고,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송출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고가 대역의 상품에 송출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디지털 채널의 경우 대부분 2개 또는 3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의무전송채널로 선정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사업자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고 미래부 관할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SO 자체의 관할은 미래부지만 저희가 어떤 채널을 송출하라 마라 이렇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왜냐하면 의무전송채널을 선정하는 것은 오로지 플랫폼사업자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전송채널을 3개 이상 해 주지만 판단은 그쪽 몫이기 때문에 어떤 음성적인 거래라든가 예를 들면 금전이 오간다든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눈에 띄었다든가 적발이 된 적이 있는지 그것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여쭙 보고 싶은 것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1, 2, 3위 점수가 나오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고득점 순으로 3개 이상 공익채널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점수대로 1, 2, 3, 4위가 나오는데 대개 그 점수가 반영되어서 의무전송채널로 선정하는 데 그것이 기준이 되는 예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공개가 안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자가 송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분야별로 선정한 3개 채널 이내에서 사업자 판단에 따라서 선택해서 송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공익채널을 선정하는 이유는 그 취지가 좋은 방송, 또 필요한 정보를 시청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익적인 채널을 선정하고, 또 PP들이 그런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공익채널을 선정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면 의무전송채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 특혜가 없기 때문에, 의무전송채널을 선정할 때도 어떤 기준이 사업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점수가 공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플랫폼사업자가 의무전송채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쪽 손에만 맡겨 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무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공익채널을 분야별로 3개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공익채널들은 다 훌륭한 채널들이니까,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1개는 송신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3개 다 송신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신영규 과장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1개 이상 2개 정도는 아날로그 채널에서도 들어가고, 디지털 채널에서는 대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통위가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다행히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본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이런 취지들이 제대로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2페이지에 공익성 방송분야 해서 방통위 고시에 3개 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2년 7월에 고시한 것인데 4년 지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과학문화진흥이라는 분야와 또 교육지원과 교육은 다른가요? 과학과 문화를 같은 분야에 그루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논란 내지는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많이 했고 그 당시 이 분야를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 가지가 고려됐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신청한 PP들의 분야를 나누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골고루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점도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12년도에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방송분야를 재조정하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만약에 이번에 선정되면 분야별로 몇 개 PP를 선정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방송분야별로 3개 이내를 선정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3개 이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4페이지에 보시면 <마> 선정 및 인정 기준에서 신청 채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지금 PP들이 다양한 분야, 장르로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업력이 오래 된 PP 말고 요새 나오는 것 중에 채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힐링’ 채널도 있고 체육, 스포츠, 레저 관련된 채널들도 있는데, 환경 관련 채널은 어디 분야에 해당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과학문화진흥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채널의 성격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채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한 해 전에 선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내년까지는 이 분야별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 5년이 지나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로 그루핑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도 기억이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분야 이름을 넓게 해서, 하여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우수한 채널을 선정해서 실제로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통위의 정책의지를 많이 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야가 넓어지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든지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하게 되는데, 저희가 분야를 어떻게 재편성하고 얼마큼 디테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의 진정한 의미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야별로 선정하려고 하는 이 공익채널 분야를 여러 가지 정책적 의미, 실제 현재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장르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방송분야를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고시를 개정하는 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올해는 바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이 기본계획대로 가자는 것이 이 위원님 말씀이시고….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법에 보면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채널을 1개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한 방송분야는 고시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사회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서 방송분야를 한 번 새로이 설정할 수 없는지 연구하고 내년에는 반영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공익채널을 3개 분야에 3개 이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사업자의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 김재홍 부위원장

- 5개 중에서 3개 선정?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과학문화진흥은 3개, 교육지원은 4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적었던 것이고 그 전에 내역을 보면 사실 그것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경쟁률 자체가 높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신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왜냐하면 저는 이 안건을 보면서 사회복지 전문채널 PP,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전문 PP들 중에서 공익채널을 선정해 주는데 아까 혜택은 김석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

는 정도 교체해 주는 것이 방송의 질을 높여주고 시청자의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교체가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체로 다 선정된 3개들이 오랫동안 해 온 PP들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하고 있는 채널이 3년 정도 연속으로 선정이 되고, 과학문화진흥이나 교육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5년, 7년 정도 계속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교육지원은 EBS 계열이 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거의 고정이지요? 우리가 재승인 심사를 하지만 그것은 교체를 제로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종편이나 보도PP는 공익채널과는 무관하게 법에 의무송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생각나는 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종편도 PP이고 보도전문도 PP입니다. 이것도 다 나름대로 PP들이고, 그런데 그쪽은 교체를 제로이지요. 그냥 시장원리에 따라서 도태율도 제로입니다. 광고 때문에 난리법석이고 광고 시장 제한되어 있는 파이를 서로 나누어야 하는데 처음에 진입시킬 때 너무 과잉 허가를 해주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이 공익채널을 고정시켜 가면 준종편, 준보도전문채널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종편이나 보도전문PP도 공익채널 선정하는 것만큼의 교체율이나 시장원리에 따른 도태가 있으면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재승인 심사 때나 계속 비판받고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익채널도 교체율을 매우 높게 할 수는 없지만 혼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송사업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어야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할 수는 없지요.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많이 따는 순서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정책 철학 면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해 오던 PP들이 문 제없이 잘하고 있다, 그대로 가자 이것보다는 경쟁 인센티브 같은 것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교체율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이내에서 하는데 제4의 전문PP가 있어서 능력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선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 말고 3개 이내에 들어있는 PP들도 한 번씩 교체해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사점수가 있을 테니까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은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분야에 대한 상세하게 나누는 부분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또 사회적 요구에 맞게 검토해서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또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저도 공감합니다. 각 분야별로 3, 4개 정도만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태가 이렇다면 공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3개 분야에 나누어져 있는데 신청 PP가 3, 4개에 불과하다, 별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수십 개의 PP들이 있는데 이 공익채널 선정을 위해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들은 격이 떨어지니까, 자격에 못 미치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봤자 별 혜택도 없고 실익이 없다, 굳이 심사까지 받아가며 할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수십 개 대상채널들이 분야별로 있을 텐데 서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경쟁이라는 것은 뭐니까? 프로그램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도 점점 시청자 후생복지도 좋아질 텐데 경쟁을 유발하지 못하는 정책 같으면 하나마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 유일하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들어보니까 의무전송채널 머스트캐리(Must Carry)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 머스트캐리(Must Carry)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방송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흥미가 없다면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무전송채널로 선정되면 채널 몇 번 정도를 받게 됩니까? 그 바운더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의무는 아니지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채널번호는 전적으로 플랫폼사업자들이 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공공·공익채널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KTV라든지 국회방송과 같이 묶어서 연결된 번호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쟁률이 많이 줄었으나, 옛날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최근 낮아진 것이 어떤 특정한 몇몇 PP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공익채널로 선정되면서 아마 다른 채널들이 자기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쟁률을 높이고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고 최근 5년간 공익채널로 선정되지 않은 채널 중에서도 심사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공익채널로 선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채널로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새로운 채널이 들어오면 기존 채널과 경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새로운 진입장벽을 낮춰져서 5년 이내에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 우리가 공익채널로 선정하도록 해 주는 이 정책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매년 선정되는 채널들이 물론 다른 PP들보다도 우수하겠지요. 하지만 아무 경쟁이 없다면 루틴(routine)화 되고 또 별 투자도 하지 않고 경쟁자가 없이 독주하게 되면 그만큼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책목표를 그렇게 PP들끼리 경쟁을 많이 시켜서, 그것이 됩니까? 곧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소관업무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의무전송채널로 배정이 되면 적어도 시청률이 확보되는 번 호대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무슨 기준을 만든다든가 유도하는 것을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기반국에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년 하면서 생각난 아이디어가 대규모 PP와 규모가 작고 새롭게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PP를 가 그룹, 나 그룹으로 구분해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그 아이디어를 적용해 본다면 방송분야별로 3개씩 선정을 한다면 2개 정도는 업력도 오래 되고 시청률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고 큰 규모의 채널이라면 하나 정도는 규모도 작고 신생채널이지만 방통위 입장에서 방송콘텐츠 프로그램의 질도 다양화하고 스타트업들을 권장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퍼뜩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본계획대로 집행하면서 가능하면 심사과정에서 한 번 해 보고, 지금 이 기본계획대로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방송분야를 재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때 그 방안도 같이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4페이지 선정 및 인정 기준에 있는 것처럼 올해는 기준에 3개 이내로 선정되었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가서 5년간 선정되지 않은 채널 중에서 선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을 추가로 선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것을 실시해 보고, 또 지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 올해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기주 상임위원

- 기본계획 수립을 이맘때 합니까? 내년에는 1/4분기 중에 일찍 하면 안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찍 할 수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야..., 오늘 여러 이야기한 것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정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9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기본계획이 통과된다는 것은 너무 촉박합니다. 사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져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준비하게끔 해야 제대로 된...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내년에는 늦어도 3월 이내에 보고드리고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2016-49-18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의결주문은 ‘경남은행,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림, 주식회사 제이피앤씨,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피타소프트, 주식회사 휴비넷 7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되, 아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한다’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금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지난 7월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개 법인이 허가신청을 하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결주문에 7개 법인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넥스트페이지라는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사항별 점수 및 총점의 미달로 부적격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허가신청법인별 세부 심사결과는 다음 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2개월마다 한 번씩 신청을 받고 신속하게 심사를 해서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허가신청법인 현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허가를 받지 못한 넥스트페이지의 규모가 직원 10명에 부채 상황이 나와 있는데 같은 규모인 리림은 직원 16명이고 부채가 5억원이고, 제이피앤씨도 직원이 15명으로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부채도 이렇게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영세규모에 제대로 정보보안이 안 돼서 허가를 안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영세규모의 다른 업체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채점표를 보니까 과락이 두 군데에서 났습니다. 60점 이하를 받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현장실사를 물론 했겠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현장실사는 없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현장실사 없이, 그런데 유일하게 넥스트페이지만, 지금 다 비슷비슷한데 자본규모나 직원수나 부채규모가 크게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만 유독 과락을 두 항목이 55점 정도밖에 받지 못한 이유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심사위원님들이 평가했습니까? 실사 없이 어떻게 평가가 되지요?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저희 위치정보 허가 심사 자체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실사는 이 위치정보 허가 심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현장점검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심사계획을 보면 지금 부채가 있거나 자본이 소규모인데도 허가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주식회사 리림 등 허가가 된 사업자는 기존에 저희 허가 심사에서 몇 차례 떨어진 사업자입니다. 허가 심사를 거치면서 위치정보보호조치라든지 인적·관리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한 상황이고, 이번에 탈락한 넥스트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설비투자 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에 있어 일관성이 굉장히 부족했고 인적 보안 조치 부분이 미흡해서, 자본 규모 등과 상관없이 보호계획 자체가 미비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넥스트페이지는 기존에 하던 업체가 아니고 이번에 처음 신청했습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넥스트페이지는 이번에 두 번째 심사를 신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적 보호조치 부분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평가항목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점수를 60점 넘었습니다. 그런데 넥스트페이지는 설비규모 적정성, 기술적 능력이 55점, 위치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 55점인데, 서류심사만으로 판단이 됩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저희가 확인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규모가 다르고 아주 잘 되어 있는 기존에 하는 2,600명 정도는 은행 이야기이고, 결론적으로 심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별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영세규모인데도 넥스트페이지가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자본 규모나 부채를 봤을 때 별로 차이점이 없는데 심사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쭙 봤습니다. 넥스트페이지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넥스트페이지가 비콘을 설치해서 관광정보나 재난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형태에서...

○ 김석진 상임위원

- 관광정보, 재난정보를 알려준다면 어느 정도 공익성도 있어 보이고, 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이런 업체들은 많이 허가가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개별사업자가 돈을 벌겠다는 목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넥스트페이지가 어떤 회사인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해서 여쭙 본 것입니다.

○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정보보호 조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진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실 위치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이나 기술적 능력은 우선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완벽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텐데, 서류로 내는 것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정도의 업체라면 그것은 사업을 허가 내줬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지가 너무나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위치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계획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치정보법 이름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망법, 망법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망법은 ‘이용’이 앞에 있고 ‘보호’가 뒤에 있고, 위치정보는 ‘보호’가 앞에 있고 ‘이용’이 뒤에 있는데, 사업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내지는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법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시장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이나 기조실, 이용자정책국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 받기 전이지만,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12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예산으로 13억원 가까운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저희 방통위가 이 위치정보 산업을 위치정보보호뿐만 아니고 산업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진흥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 개정 추진도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어느 법은 보호가 앞에 있고 어느 법은 이용이 앞에 있다고 했는데 결국 저희가 이용과 보호 간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치정보가 너무 보호 쪽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이용 활성화 내지는 산업 활성화 쪽에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용과 보호 간에 균형을 잡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활성화 기본계획 맨 뒷장의 역할분담 한 장짜리에 향후 추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회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50분 폐회 】